

제2주제논문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김 총 일

(前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목 차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I. 서 론	40
II.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42
1. 조정과 중재	42
2. 피해구제보도문 유형	43
III. 보도청구 관련 주요 조정 사례	45
1. 개 요	45
2. 정정보도청구 사례	46
3. 반론보도청구 사례	48
4. 무모하고 무감각한 편집으로 인한 피해사례	54
IV. 결 론 : 언론보도 시 유의점	56

보도청구 관련 조정사례로 본 언론분쟁의 현황 및 보도 시 유의점

김 충 일 (前 경향신문 기획사업본부장, 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I. 서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언론중재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언론보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분쟁이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든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언론보도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피해의 정도 역시 신속하고 크다는 데 있다. 또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소송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신청인의 신청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조정이 완료되고, 비용도 무료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등이 기존에 소송에 대해 가졌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누구든지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것이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참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수가 1981년 44건, 1990년 159건, 2000년 607건, 2010년 2,200여건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온 것도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언론조정중재로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유형은 다양하다.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침해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소송으로만 가능하지만, 정정이나 반론보도와 같은 보도형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단독으로 혹은 병합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보도형 청구의 대표적인 유형인 정정이나 반론보도는 보도의 진위를 따지는 정확성, 보도의 타당성을 따지는 객관성에 대한 시비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조정 및 중재의 초점은 보도내용이 정확한지, 객관적인지를 따지게 되고, 중재부는 신청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언론사에 권유하거나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언론의 기본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 고발기능이라고 할 때, 그 기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반격을 당할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주요 신문사에는 취재기자가 있고, 담당 데스크가 있고, 부장이 있고, 또 편집자가 따로 있어 기사가 문제되면 최종적으로 편집국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사소한 사안을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어휘를 써서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거나, 의도를 지나치게 드러내다 보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때로 원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되는 것은 보도 매체와 기자의 신뢰성 그리고 보도 의도 자체를 훼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언론들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방법 중에 보도형 청구와 관련한 언론조정 중재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재, 편집 혹은 보도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짚어보고 향후 언론보도 시 유의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1. 조정과 중재

신청인은 언론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조정과 중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법률가와 언론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부가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입장에서 개입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중재’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재’는 신청 전에 양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의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중재합의서)을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과 중재는 신청인 유형, 신청대상매체, 신청가능기간 등에서는 동일하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중재대상매체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이다. 기존에는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지만, 뉴미디어 등장에 맞추어 대상매체 범위를 확장해 왔다. 특히 2009년 언론조정중재대상이 된 포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원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다는 측면에서 언론이라 보기 어렵지만, 언론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매체에 포함시켰다.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정과 중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케한다. 다만,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과 중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정 후 ‘조정성립’이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언론사는 조정성립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가 조정성립이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조정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부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중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은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결정에 따라 언론사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등을 게재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가 그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조정과 동일하게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피해구제보도문 유형

언론조정중재제도에서 피해구제방법은 크게 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나눌 수 있다. 보도청구에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3가지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시 도입된 반면 반론보도청구와 같은 보도청구는 1981년 언론조정중재제도 도입 시부터 있어 왔으며, 현재도 가장 보편적인 언론조정중재제도에 의한 피해구제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언론조정중재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란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맞게 고쳐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해

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정정보도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에 합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3항).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5항). 정정보도문은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포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도록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 그러나 조정제도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는 만큼 정정보도 내용이나 게재 방법 등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론보도 역시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않는다. 정정보도의 경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는 심리 중의 핵심 사안이지만, 반론보도의 경우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여러 주체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음에도 언론이 일방의 입장만을 보도함으로써 사건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일방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론보도는 따로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는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무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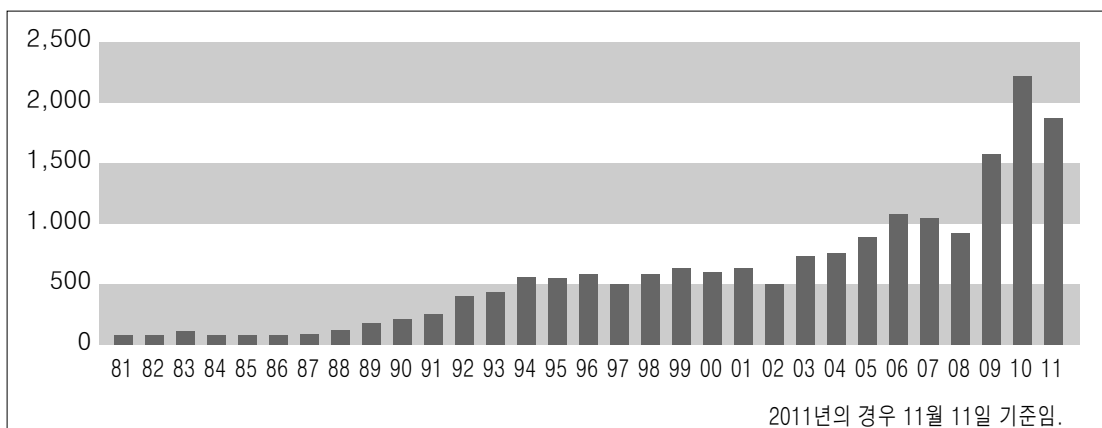
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Ⅲ. 보도청구 관련 주요 조정 사례

1. 개요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2011. 11. 11)까지 총 18,300여건(조정 17,984건, 중재 321건)의 조정과 중재 신청을 처리하였다. 아래 [그림]을 보면, 언론조정 신청이 연도에 따라 증감을 나타내면서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사례 중에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리고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언론조정신청 내용을 보면, 당시의 언론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현재의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연도별 언론조정 신청 현황



2. 정정보도청구 사례

(1) 정황에만 몰두한 나머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사례

a. 사건 개요

대학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A주간신문은 지난 2011년 2월 「S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로, “S 대학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K 교수를 기소유예 처분이 나기 전날 이미 학과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K 교수는 보직을 받은 후 총장에게 ‘자신을 고발한 교수 4명과 함께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냈고, 이를 학교 측에서 수용해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을 폐쇄했다. 한편 동료교수 4명이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S 대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S 대학교는 “①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이 폐쇄된 것은 K 교수가 보직에 임명되기 이전이므로, K 교수가 보직을 맡은 후 연구실이 폐쇄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② K 교수는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S 대학교가 K 교수의 ‘기소유예’ 사실을 안 직후 학과장에 임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③ K 교수가 제출한 탄원서의 주 내용은 ‘동료교수 4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공포에 떨고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배려를 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법원은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만 S 대학교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간접강제를 통해 이 부분만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했다(2011서울조정330·331).

b.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 참석한 A주간신문은 “S 대학교에 K 교수와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나, S 대학교가 끝내 이에 응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변 정황 및 인물들에 대한 취재만 할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해 기사화한 것이다. 하지만 K 교수 관련 문제로 신청인 S 대학교 내부에 상당한 분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에 대한 정황을 보도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해당 조정신청을 담당한 중재부는 “K 교수가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K 교수 보직 임명 전에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 폐쇄에 대한 메일을 이미 발송했던 사실 등 신청인 S 대학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 측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및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정황을 기초로 4인의 교수의 말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으로 보았다.

또 설령 전체적인 맥락이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일단 신청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기사를 정정하도록 조정했다.

(2) 기본적인 취재가 부실한 사례

a. 사건 개요

A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0년 10월 『‘G20’ 깨자, 좌파진영 80여 개 단체 뭉쳤다』 제하의 기사에서 “H 단체는 2009년 이적단체로 분류된 바 있는 친북단체로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H 단체는 “청소년의 복지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친북단체와는 무관하다”며 A 인터넷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408·1409).

b.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A 인터넷 신문이 H 단체나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지 않은 채, H 단체를 친북단체로 단정해 보도한 것임이 확인됐다. A 인터넷 신문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조정에 합의했다.

(3) 사회적 파급성 높은 사안에 대한 집착과 선입견이 개입된 사례

a. 사건 개요

소비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신문 A사는 “B사가 생산, 판매하는 음료 C에서 머리카

락과 눈썹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제보자 D씨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면서 B사의 실명 및 음료 제품명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제품 제조 공정 과정 중에 절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며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은 섬유조직의 일종으로 보이며,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A사에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A사는 ‘논란 확산을 경계하며 압박성 발언과 경고를 했다고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위원회에 청구했다 (2010서울조정1583).

b. 심리 내용

조정신청을 담당한 중재부는 해당 제품을 조사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기관에서는 “문제의 이물질이 제조공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회신을 중재부에 보내왔다.

중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제보자의 말만 듣고 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고 B사의 제품에서 나온 것이 머리카락과 눈썹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A사에 정정보도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및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B사와 원만하게 합의했다.

3. 반론보도청구 사례

반론보도청구 주로 보도 매체의 사안에 대한 견해, 시각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시작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경우 기자나 언론기관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을 기사에 반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며 거기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그 경우 극히 객관적이고,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논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치평가가 개입되는 코멘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비판한다고 인신공격성, 비아냥거림, 야유성 단어를 구사하는 것은 품위와 자기 실력의 부족, 경박함 같은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되기 쉽고, 자료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 한쪽으로만 치우친 인터뷰어 동원 등은 ‘편향적’이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1) 과도한 공격적 비판기사로 인한 청구 사례

a. 사건 개요

A 주간지는 2011년 3월 『황금알 거위 B 사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로,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B 사가 내분에 휩싸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A 주간지는 “B 사의 양대 주주 중 하나였던 C 사가 주주배당을 크게 높이고, 기술사용료를 대폭 증액해 요구하는 등 B 사의 이익 빼가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C 사는 이미 사장으로 내정됐던 인사를 내치고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었던 D 씨를 사장으로 앉히는 ‘궁정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B 사의 임원 상당수가 그만두는 결과가 초래됐다. 사장으로 선임된 D 씨는 B 사의 핵심경영가치였던 ‘인간존중경영’, ‘사회공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내부에서 ‘변절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한편, C 사는 B 사의 전임 사장 E 씨가 나간 후, B 사의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B 사는 “B 사의 양대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법적인 것이며, 기술사용료 인상 역시 양 주주사와 B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므로 ‘이익 빼가기’가 아니다. 또한 D 사장은 양 주주사의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선임되었으므로 ‘궁정쿠데타’가 아니며, 취임 시 약속한 ‘사원존중 및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으므로 ‘변절자’라는 표현은 지나치고 사실도 아니다. 또한 B 사의 경영권은 B 사에 있으므로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C 사에 경영권을 빼앗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2011서울조정226).

b.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B사는 “B사의 양대 주주인 C사와 F사 간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A 주간지는 일방 당사자인 F사의 의견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 보도해 오히려 F사의 홍보수단으로 전략하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주간지는 “B사 비서실과 홍보팀을 통해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B사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반론 의사나 의견 개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이다. 또한 기사에 기자 개인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F사 및 B

사에서 오래 근무한 전·현직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의견이라 판단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들은 신청인측 주장대로 ‘일방적’인 기사일 수도 있지만 “틀린 부분은 당연히 정정이 필요하지만, 팩트를 놓고 ‘해석’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적용하면 언론에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팩트에 대한 해석이 과도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고,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라는 반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언론이 모두 잘못했다고 정정을 주장할 수는 없다. 팩트의 해석에 대해서 언론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숫자나 사실관계가 명확히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할 것을, 그 외 사안의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사의 반론을 충분히 실어주는 반론보도로 할 것을 양 측에 권고했다. 이 사건은 보도자체의 맥락이 틀려서가 아니라, 기자가 다소 정의감이 지나친 나머지 과도하게 양측은 선과 악으로 구분짓고, 기자가 한쪽편에 서서 신청인측을 자극적인 어휘를 빈도 높게 사용하여 매도함으로써 빚어진 갈등이었다.

이 때문에 피신청인은 별것도 아닌 몇 가지 숫자 때문에 정정보도를 내보내야 했다는 점에서 원보도의 의도를 반감시켰다. 결국 양측은 중재부의 권고를 수용해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신청인측을 만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원만히 합의하였다.

(2)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운 사건 사례

a. 사건 개요 I

중앙일간지 A신문은 지난 2010년 7월 『“다 즐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제하로, “국회의원 B씨가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다 즐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심사위원들은 (토론)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청와대를 방문한 여학생에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사모님만 없었다면 네 번호도 따갔을 것’ 이라고 발언하는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B씨는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C대 토론팀에게 ‘심사위원들은 실력도

중시하지만 이미지도 본다. 그런데 상대했던 D대 팀 학생들이 평범한 이미지인 것에 비해 C대 팀은 너무 다 잘생겨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고 위로하는 취지였을 뿐, 외모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 아나운서와 기자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기자가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으므로 기자가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한 바는 없다. 또한 대통령이 여학생만 쳐다봤다는 부분은 '1년 4개월 전에 아나운서를 지망하다는 여학생이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던 여학생임을 알게 되어 그 당시 대통령이 어린 학생들이 참석한 것을 기특하게 여겨 학교와 전공을 묻기까지 했다'는 취지였지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133·1134).

b. 심리 내용 I

조정심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B씨는 "기자가 당시 매우 시끄러운 고깃집에서 있었던 대화를 멀리 떨어져 있던 학생에게서 전해 듣고 취재하여 과장, 왜곡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복수의 학생에게 확인해 취재를 마쳤고, 이후 학생들이 B씨가 기사 내용과 같이 발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으므로 사실 보도이며, 이미 이 건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정신청을 담당한 중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B씨의 주장 중 A신문이 보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으로 실어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 A신문에 반론보도 게재를 권유했다. 이에 A신문은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회의원 B씨는 당시 학생들과의 모임이 주위가 매우 시끄럽고 산만한 고깃집에 있었고, 대화가 4인 테이블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으며, 문제의 아나운서 발언은 취재기자가 해당 학생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국회의원 B씨의 발언이라는 부분도 평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며 전후 맥락상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국회의원 B씨가 밝혀왔다"는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c. 사건 개요 II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의원 B씨는 "A신문이 지난 조정(2010서울조정1133·1134)

에서 합의한 반론보도문 바로 옆에 재반론을 게재함으로써 반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A신문에 반론보도문을 재게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2010서울조정1193·1194). 그러나 국회의원 A씨는 조정심리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해 국회의원 B씨와 A신문 간의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A신문이 『알려왔습니다(반론보도)는 정정보도가 아닙니다』, 『B의원 끝없는 거짓말... 언론중재위 문건까지 왜곡』 제하로 <2010서울조정1133·1134> 사건에서 합의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면서, 그 옆에 “당시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취재했고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반론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앞선 사건에서 반론보도로 합의된 내용을 국회의원 B씨가 마치 언론사가 기사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정정보도한 것처럼 부풀려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B씨가 특히 보도자료에서 ‘취재기자가 아나운서 발언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취재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는데 심리 당시 A신문 대리인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B씨는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했던 A신문 기자가 ‘아나운서 관련 발언을 들은 당사자인 김 모 여학생에게 전화 통화를 확인한 바 있지만, 김 모 여학생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라고 인정해, 이를 반영한 반론보도문이 작성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2010서울조정1195·1196).

d. 심리 내용 II

조정심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B씨는 “A신문이 반론을 게재하면서, 반론보도 바로 옆에 일방적인 재반론을 게재하여 반론보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본지 대리인이 심리 중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라고 발언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이미 소송 계류 중이므로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고 맞받았다. 결국 담당중재부는 “사실관계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3) 무리하게 보도 방향에 맞추려 반론권 무시하다 뒤늦게 반론권 허용한 사례

a. 사건 개요

A 방송은 지난 2010년 5월, 한 시사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의 무게 - 학자와 논문』 제 하로, 교수 출신 공직자들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다. A 방송은 현직 국회의원 중 대학교수 출신 국회의원의 논문이중게재 의혹에 대해 취재하면서, 교수출신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인 신청인 B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A 방송은 “……확인결과, 이중게재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6명이었다. 의원들의 해명도 공직자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내레이션에 이어 “저 같은 사람이 쓰면 막 여기저기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존에 나갔던 논문, 발표했던 논문도 ‘발표된 것 잘 봤습니다’, ‘그것 좀 신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쪽에 실으면서 ‘니 논문에 그것을 안 썼느냐?’ 고 원 저자에게 얘기하면 원 저자는 참 답답한 거죠”라는 B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B씨는 “A 방송이 문제삼은 논문은, 내가 저술한 책이 C학회가 선정하는 ‘○○언론법상’의 2003년도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2회 ○○언론법상 수상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수상기념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그 후 이 논문을 보완, 정리해 교내 학회지에 실었는데, C학회에서 ‘수상자의 기념논문이었던 학술세미나 발표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고 싶다’고 요청한 후 그대로 게재한 것뿐이다. 즉, 이 논문은 내가 자진해서 이중 투고해 발생한 이중게재가 아니라, 시상자였던 C학회가 수상자인 나의 수상기념 논문을 학술세미나 기록용으로 학회지에 게재한 것이다. 학회에서는 수상작이나 초빙논문을 다시 게재하는 것을 이중게재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게재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집’ 등에서도 이중게재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정을 충분히 취재자에게 설명했음에도, 일반 시청자들이 윤리적·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인 뻔한 ‘이중논문 게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나를 악의적인 이중게재를 한 다른 인사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보도했다. 또한 인터뷰 역시 이 논문이 두 곳에 실리게 된 경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빼놓고, 발언의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 보도해 공직자로서의 명예에 상당히 큰 손상을 입혔다”며 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2010서울조정915).

b. 심리 내용

조정심리 과정에서, A 방송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논문 이중게재 및 연구비 이중 수령의 연구부정행위를 파헤치고자, 교수출신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논문 실태를 점검하고 이중게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취재의 도를 밝혔다. 이어 A 방송은 “신청인 B씨는 C학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연구실적을 올리

기 위해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므로 이중게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중게재 여부를 가릴 때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 또한 특집 또는 선집일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논문이 실린 책자에는 특집이나 선집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 더군다나 신청인 B씨는 논문이 게재된 C학회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청인 B씨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보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조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는 “외형적, 결과적으로 보면 이중게재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해당 보도는 이중게재인지 여부만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중게재를 없애자는 취지로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보도로 판단된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고, 신청인 B씨는 논문의 이중게재로 연구수당이나 승진 등에 있어 특별한 이익을 얻었거나 추구한 것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은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반론은 보도의 공익성, 또는 진위 여부와 전혀 별개의 청구로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청인 B씨의 반론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반론보도를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반론보도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4. 무모하고 무감각한 편집으로 인한 피해사례

(1) 무감각한 편집 사례

a. 사건 개요

광주 지역에서 고속버스 사업을 하고 있는 G고속관광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G고속관광이 운영하는 버스가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문이었다. 화들짝 놀란 G고속관광은 소문의 출처를 찾기 시작했고, A협회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A협회 신문은 지난 2011년 3월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제하로 “유사경유를 판매한 판매자와 이를 구입해 사용했던 버스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기사와 함께, G고속관광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버스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을 보고 G고속관광의 거래처나 고객사, 심지어는 차고지 관할 공무원들까지 G고속관광이 유사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G고속관광에 문의를 해온 것이었다. G고속관광은 곧바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했다(2011서울조정343·344).

b. 심리 내용

조정심리에 출석한 A협회 신문은 신속하게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했다. A협회 신문은 “유사 석유 사용 적발 기사를 작성한 후, 이에 부합하는 자료 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G고속관광 소속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발견해서, 이를 별 생각 없이 기사에 게재했다”고 기사 보도 경위를 밝혔다. A협회 신문은 즉각 G고속관광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A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정정보도를 내보내고 A협회 신문 1면에도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또한 150만 원의 손해배상에도 합의했다.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한 업체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데다가, 기사 내용이 G고속관광의 영업이나 활동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A협회 신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사진을 게재하고, 모자이크 등의 적절한 처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본 사진은 위 보도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만 부언했더라도 곤욕을 치루지 않을 수도 있었다.

(2) 무모한 편집 사례

a. 사건 개요

인터넷 신문 A사는 지난 2010년 1월, 『시민채널 ○○○, 공산주의 선전방송인가』 제하로 “시민채널 ○○○이 제작하는 모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이 만든 내용을 심의 없이 내보냈다가 일부 문제가 지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지원금 중단 조치를 받았고, 결국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됐다. 또한 참여정부 5년 동안 총 15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했고,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하는 방송내용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시민채널 ○○○은 “보도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내부의 자체 운영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며 방송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중단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종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참여정부 기간 동안 150억 원이 아닌 83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했고,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시청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편성원칙으로 하는 시청자 참여 방송이므로 사회주의 옹호를 편집방향으로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60).

b. 심리 내용

조정심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인터넷 신문 A사는 신청인 ○○○에 보도내용과 관련해 직접 취재를 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한 간접 취재를 한 바 없고, 모 시민단체의 성명서 보도자료를 받아 이를 여과 없이 재작성해 보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시민채널 ○○○의 반론이나 주장은 전혀 게재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만을 기사화한 것이다. A사는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3) 일방적 제보에 의존한 보도한 사례

a. 사건 개요

재건축 관련 뉴스를 전하는 A신문은 “B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임원이 C공기업을 정비업체로 선정하는 가계약을 맺은 후, 본 계약 체결 전에 C공기업 책임자와 일본 관광을 다녀왔고, 그 후 가계약에서 제시된 금액대로 본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B 재건축추진위원회 임원이었던 신청인 D와 E는 “C공기업과의 계약을 이용해 일본에 관광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일본에서 있었던 재개발 관련 세미나 때문에 일본에 다녀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회의사진 등을 제시하며 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2010서울조정1338).

b. 심리내용

조정심리를 통해 A신문은 “B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였던 F씨와 G씨의 제보에만 의존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신청인들에게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며 신청인들의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했다.

IV. 결론 : 언론보도 시 유의점

이 글은 최근의 언론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향후 보도 시 유의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할까 한다.

첫째,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정확한 팩트

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 언론들이 경쟁하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보나 풍문에만 의지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 등은 뉴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 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뉴스로 생산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정정하는 태도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이 일방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국민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방의 입장을 강조하거나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의 여러 입장들을 균형 있게 취재하고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편집 시 인격권과 관련해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 지에 대해 보다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특히 여기서 데스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뉴스를 생산하거나 데스크보다 경험이 부족기에 인격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데스크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에 인격권 침해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일방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례에서 나왔듯이 최근 영상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재됨으로써 조정중재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같은 피해구제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제도도 일단 발생한 피해를 완벽하게 복구할 수는 없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보도에 일단 부정적인 내용으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미지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손해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론 개인이나 기업 등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은 기사 작성 시 개인이나 기업 등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본의 아니

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언론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언론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후 기사 작성이나 편집에 있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언론보도와 인격권’ 관련 교육을 받은 언론인들이 교육내용이 취재 및 편집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언론인들이 언론보도와 인격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게 될수록 기사 작성 시 인격권의 침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자들이 언론보도와 인격권과 관련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